

## 오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

공고 제2019-60호에 의거 시행하는 오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,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(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자 및 주소, 물건의 종류, 구조, 수량 등)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의개요	사업의 위치	충북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일원
	사업의 명칭	오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
	사업의 규모	수혜면적 20.54ha
	사업시행자의 명칭	사업시행자 : 영동군수 위탁시행자: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보상사무실 :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지역개발부
2. 보상대상물건	토지 및 물건조서 : 별첨(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함)	
3. 보상계획 열람	1. 열람장소: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지역개발부 2.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: 2019.07.15. ~ 2019.07.29.	
4. 보상의 시기 및 방법 및 절차		
구분	일자(변경 가능, 추후 통지)	주요 내용
감정평가	2019.07~08	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]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이 해당하는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,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할 의사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에 희망여부, 희망하는 감정평가업자, 의견 등을 기재하여 보상 사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습니다.
보상액 산정 및 통보	2019.08	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]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6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평균 산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보상협의 및 계약체결	2019.08	보상협의를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 개인별로 손실보상협의 요청서(협의 및 계약관련 안내문 포함)의 서면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.
보상비지급 청구 및 지급방법	-	보상금 지급은 계약서를 체결하고 토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구비서류가 오나료되면 청구자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 처리하여 보상금 지급의무를 종료합니다.

1. 상기 보상계획은 사업 여건에 따라 계획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.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
- 3.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]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토지관련 보상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상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처리합니다.

2019. 07. 15.

사업시행자 : 영동군수

보상업무대행 :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

